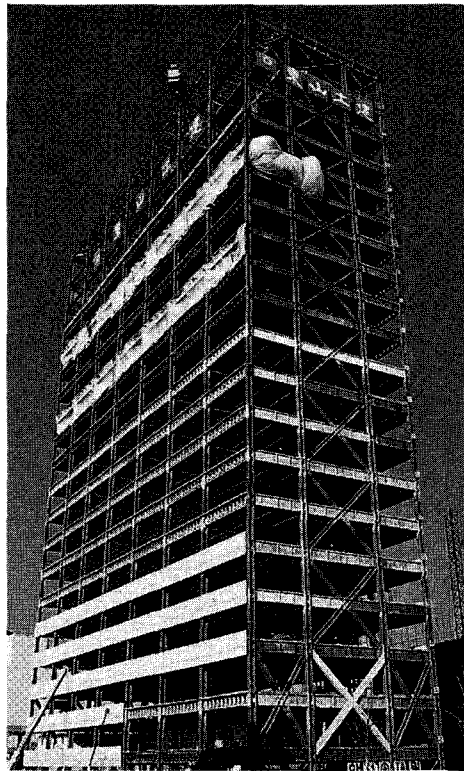


[건설교통부, 부패방지대책 관련 30대 개선과제 선정]

불법하도 · 기술자격 대여 등 강력 제재

건설교통부는 지난 7월 2일 민관으로 구성된 부패방지추진기획단 제2차 전체회의를 개최하고, 건설공사 관련 부조리 방지를 위해 건설산업종합정보망과 시공능력평가자료를 이용한 불법하도급 및 기술자격 대여 등 위법사항을 색출할 수 있는 전산시스템을 개발하는 내용을 포함한 부패방지대책 관련 30대 개선과제를 선정하고 올 하반기부터 적극 추진하기로 했다.

개선과제에 따르면 건설교통부는 올 하반기 건설산업종합정보망과 시공능력평가자료를 이용해 위장직영, 이면계약 등 불법하도급과 부실업체 및 기술자격 대여 등 위법사항을 색출하고 강력 제재조치를 취할 방침이다.



이를 위해 오는 8월 하도급 부조리 점검요원 등 지침을 대한설비건설협회 및 건설협회 등 관련협회에 시달해 업체들이 시공능력평가를 위해 제출하는 시공실적을 올 12월 전산시스템 구축 이전까지는 수작업으로 꼼꼼히 확인하기로 했다.

또 재정경제부와 협의를 통해 수급인이 기성금 청구시 이미 지급 받은 기성금에 해당하는 하도급대금의 수령확인서 첨부을 의무화하도록 공사계약일반조건을 개정하기로 했으며, 건설교통부는 수의계약에 따른 부조리를 제거하기 위해 7천만원 이하의 전문공사 등 경

미한 건설공사에 대해서도 전자입찰에 의한 경쟁계약을 체결하도록 했다.

■ 건설교통부 부패방지대책 주요내용

△ 건설공사의 투명성 확보

공사위치, 공사기간, 사업비, 시공자, 공사개요 등 개략적인 사항만 기관별 홈페이지에 기재하던 것을 앞으로는 지원업무수행자, 감리원, 현장기술자, 하수급인, 설계변경 내용 및 사유, 설계(변경)자 등 전과정을 공시하도록 해 공사과정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부패행위에 대한 국민의 감시시스템을 구축하여 오는 9월 건설공사과정 공시에 관한 지침을 마련해 공시할 계획이다.

△ 청렴서약제 시행

건설공사의 설계·시공·감리 등 계약시 입찰특별유의서 및 계약특수조건에 청렴서약을 명시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계약해지 및 입찰참가자격(6개월~2년)을 제한한다. 입찰특별유의서 및 계약특수조건에 관한 지침을 8월 중에 마련할 계획이다.

△ 수의계약제도 개선

건설공사의 수의계약 시행에 따른 부조리를 근본적으로 제거하기 위해 현재 수의계약 대상인 1억원 이하 일반공사, 7천만원 이하 전문공사 등 경미한 건설공사도 전자입찰에 의한 경쟁계약을 체결하도록 한다. 이를 위해 국가계약법령 개정을 재정경제부에 요구하고 법령개정 이전에도 자체적으로 전자 경쟁계약을 시행하도록 8월에 지침을 시달한다.

△ 감리원 비리 제재 강화

감리원이 금품수수 등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경우도 현재에는 감리원의 자격을 제한할 수 있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않아 감리업무를 계속 수행할 수 있었으나 앞으로는 감리원의 자격을 박탈하는 결격사유제도를 도입(오는 12월 건설기술관리법 개정)하여 감리용역

계약시 감리원의 청렴서약제를 시행한다. 청렴서약제는 건설공사 청렴서약제와 함께 추진한다.

△ 하도급부조리 방지

건설공사관련 부조리를 방지하기 위해 건설산업 종합정보망과 시공능력평가자료를 이용해 위장직영, 이면계약 등 불법하도급을 적발하고 부실업체 및 기술자격대여 등 위법사항도 색출할 수 있는 전산시스템을 연내 개발하여 시행한다. 하도급 부조리 점검요령 등 지침을 오는 8월에 시달하고 전산시스템 개발 전까지는 수작업으로 불법하도급 등을 확인한다.

△ 도로점용·사용허가 세부기준 제정

하천점용허가처리기준과 절차를 민원실 및 홈페이지에 게재하여 시행하고 있으며 허가기준과 사안별 업무처리절차를 연내 합리적으로 개선한다.

△ 건설업체 관리감독 강화

건설산업종합정보망을 이용해 부실업체, 기술자격대여 등 위법사항 적발시스템을 연내 구축한다. 기술자 경력수첩 대여시 기술자격 취소 및 당사자 벌금형을 부과할 수 있도록 건설산업기본법을 12월에 개정한다.

△ 감리업체 선정기준 개선

일부 발주청에서 시공하고 있는 건설공사의 감리업체 선정을 위한 감리원 경력을 산정함에 있어 형평성에 문제가 있는 공무원 경력 100%, 시공회사 경력 80%를 동등하게 인정하도록 개선하여 오는 12월 평가기준을 제정한다.

△ 책임감리대상공사 준공검사제도 개선

준공검사 과정에서 감리회사의 부패방지를 위해



검사팀(비상주 감리원)을 구성하고 공무원이 입회하도록 12월 감리업무수행지침서 개정한다.

△ 하도급대금 지급절차 개선

수급인이 기성금에 해당하는 하도급대금의 수령 확인서를 첨부하도록 의무화한다(재정경제부에 공사계약일반조건 개정을 8월에 건의). 또 건설산업기본법을 내년에 개정하여 발주자가 물가변동에 따른 계약금액조정 등 설계변경시 하수급인에게 통보하도록 할 계획이다.

△ 건설공사 대가지급기일 단축

대가지급 청구 후 14일 이내 지급하도록 되어 있는 선금 및 준공금을 7일로 단축해 대가지급과 관련한 부조리를 예방할 수 있도록 8월 재정경제부에 공사계약일반조건을 개정을 건의한다.

△ 실적공사비제도 도입 개선

대한건설협회에 위탁해 시행하고 있는 표준품셈 제도를 실적공사비제도로 전환해 오는 12월에 국책

연구기관을 이관한다.

△ 부도사업장에 대한 기금지원기준 객관화

부도사업장에 대한 국민주택기금지원기준을 객관화해 대출과정에서 주관적 판단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부패소지를 제거한다.

△ 하자 여부 판정의리 방법 개선

하자 여부에 대한 분쟁시 사업주체가 전문기관에 하자 판정을 의뢰할 수 있도록 하던 것을 사업주체와 입주자 대표회의가 공동으로 의뢰하도록 개선한다.

△ 부패신고제도의 활성화

부패신고제도를 활성화하기 위해 각급 민원실과 건설현장에 현재 건설교통부에서 운영 중인 부조리 신고센터에 대한 홍보 팸플릿을 제작해 배포하고 부패신고안내문을 상시 게시하도록 한다. 민원인이 인허가 등 민원서류를 제출하는 경우는 민원처리 절차 및 부패신고 요령 등에 관한 안내문을 사전에 교부해 부패를 예방한다.